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2. 21.(월)	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박종환 (044-202-7026)
		담당자	서기관	허기훈 (044-202-7034)
<공동>	(긴급고용안정지원금)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원주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박경구 (044-202-7374)
<공동>	(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) 지역산업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일훈 (044-202-7404)
		담당자	사무관	노경우 (044-202-7419)
<공동>	(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)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수경 (044-202-7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대근 (044-202-7471)

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

◇ 특고·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
4,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

□ 2월 21일,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,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(4,094억원, 68만명<기존 56만 / 신규 12만>)

○ (지원대상) 방과후강사, 문화예술인,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·프리랜서 68만명

※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·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(기존 지원대상의 15%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,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교사, 방과후교사,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(기존 지원대상의 85%)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

▶ (제외직종)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
⑥골프장캐디,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

○ (지원규모) 기존 수급자 50만원, 신규 수급자 100만원

○ (지원절차)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(56만명)*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, 신규(12만명)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

* 단,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

☞ (신청기간 및 신청방법) 추후 시행공고 예정(3.4.경) *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

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(760억원, 7.6만명)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(법인) 택시기사
- (지원규모) 1인당 100만원 지급

*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·추진

☞ (신청기간) 3.2.~3.14.(잠정) *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
(신청방법)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*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

③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(95억원, 6만명)

- (지원대상)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원·휴교·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(무급)를 사용한 근로자
- (지원규모)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(최대 10일)

☞ (신청기간) 3.30.(잠정)~
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온라인) 또는 고용센터(우편 등) 신청

